

「구미시 산동읍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 산동읍이 설치(2021.1.1.시행)됨에 따라 「구미시 산동읍 설치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 산동읍 설치에 관한 조례」의 폐지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없음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
 - 구미시 산동읍이 설치(2021.1.1.시행)됨에 따라 「구미시 산동읍

설치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구미시 산동읍이 2021년 1월 1일 산동면에서 산동읍으로 승격되었고, 그에 따라 관련 조례가 개정되고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본 조례는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이 효율적인 자치법규 관리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불필요 조례 폐지 등 자치법규 정비를 적기적시에 시행하여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위해 노력하길 바랍.